

# 교무위원회규정

제정 1989.03.01      1차 개정 2008.09.01  
2차 개정 2017.01.0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 학칙 제49조의2(교무위원회)의 규정에 의한 교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1.1.>

**제2조(구성 및 임무)** ①위원회는 직제규정 제4조(기구)제3항과 같이 구성한다. <개정 2017.1.1.>

②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,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**제3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원은 보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한 위원은 위촉기간으로 한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 및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
2. 교수회의에서 위탁을 받은 사항
3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5조(의안발의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을 발의한다.

②위원이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안하여야 한다.

③위원장은 제안된 의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.

**제6조(회의)**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7조(회의결과)** ①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즉시 내부결재로 기안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며, 총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교직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기타)**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